

제 호

##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

성명		생년월일	
주소		세대주 성명	

1. 귀하께서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이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,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(개월 간) 읍·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나오셔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 발급안내

-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어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-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가 필요합니다.
  - 가) 학생증 또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(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함)
  - 나)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·이장의 확인
  - 다)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 세대원, 배우자,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동행
- 준비해야 할 사진  
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(3.5cm×4.5cm). 다만,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진 1장을 추가해야 합니다(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).
-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신청인 또는 신분이 확인된 17세 이상 동일 세대 세대원 등이 직접 읍·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해야 합니다. 다만, 신청인이 원하면 등기우편료를 부담하고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2.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(문의전화: 담당자: ).

※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
년 월 일

읍·면·동장

직인

자르는 선

제 호

##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수령증

발급대상자	성명		생년월일	
	주소			
수령인	신청기간		세대주 성명	
	성명	(서명 또는 인)	발급대상자와의 관계	
	주소			
비고				